

# 어린이집 소독비용 지원

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3. ~ 12.
  - 지원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  - 사업내용 : 코로나19 확산 방지 소독비용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 확보
  - 지원대상 : 1,126개소(3.5. 현재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)
  - 지원품목 : 어린이집 자체 소독물품 구입비(정원별 차등)
  - 소요예산 : 100백만원(재난안전특별교부세)
- ☎ 문의처 :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(062-613-3151, 3154), 콜센터(062-120)